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44 발의년월일 : 2020.10.26. 발 의 의 워 : 김혜정 의워

> 강민구 의원 김성태 의원 박우근 의원 이만규 의원

이진련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개정이유

가. 2019. 12.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2021. 1. 1시행)에 따라 종전에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 2가지로 구분·부과하던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를 2021년부터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3가지로 구분하여 부과함.

나. 목적세는「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을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을 제외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지방세법」제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을 추가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예산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입)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 2. 「지방세법」제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의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 금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각호와 같다.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2.「지방세법」제142조에 따른 지역자
	원시설세중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의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제외
	<u>한다.</u>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차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제11호·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 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 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세법」('21.1.1. 시행)

-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가. 발전용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지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지방세징수법」

-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 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